



( : )

[ 2019. 7. 16.] [ 361 , 2019. 7. 16., ]

( ) 044 - 200 - 5771

1 ( ) 「 」

2 ( ) 「 」 ( " " ) 2 12 " " " 「 」 2 1 2 ( " " ) .

3 ( ) 4 1 「 」 ( " " ) 2 1 1 ( " " ) 「 」 ( " " ) . < 2018. 7. 4. > 1 2 4 1 2 2 2 1 ( 「 」 6 1 가 ) .

- 1. 2.

가

1 3

가

4 ( ) 4 1 4 " " . < 2017. 7. 28. >

- 1. , , 2. (導船船), (曳船) 3. 「 」 2 1 ( 「 」 ) (經由港) 4. 5. 가

5 ( 가 ) 4 3 가 가 3 3 가 . < 2019. 7. 16. >

6 ( ) 6 1 「 」 26 1 가 .

- 1. 「 5 2 " 」 2 1 .

- 2.
- 3.
- 4.
- 5.

가

7 ( ) 7 1 (繫船) 4

1 4

8 ( ) 10 2 " " 6 2

9 ( ) 15 1

1. (船首) (被) (船尾) 200 ,

2. 3

1

1

10 ( ) 24 1 5

( )

. < 2019. 7. 16.>

1. ( )

2.

3. (隻數), (諸元)

4. 「 」 60 2 (船級法人)( " " ) (曳航

力)

1

「 」 36 1

( )

24 1 ( " " )

6

. < 2017. 9. 21.>

1 2

1.

2.

3.

4.

24 2 1 " " 1

24 2 2 (全) 가 60

24 2 3 " " 2

• 1 24 2  
, 25 7

• 8

- 1.
- 2.
- 3.
- 4.

10 ( ) 24 1 5

( )  
. < 2019. 7. 16.>

1. ( )
- 2.
3. (隻數), (諸元)
4. 「 」 60 2 (船級法人)( " " ) (曳航

力)

1 「 」 36 1

( )  
24 1 ( " " )

6

• .< 2017. 9. 21.>  
1 2

- 1.
- 2.
- 3.
- 4.

24 2 1 " " 1  
24 2 2 (全) 가 60  
24 2 3 " " 2  
24 2 4 " " 30  
「 8 10 29 2  
(年限) 5 1 .< 2018. 7. 4.>

• 1 24 2  
, 25 7

.< 2018. 7. 4.>

• 9  
. < 2018. 7. 4.>

- 1.
- 2.
- 3.

---

4.  
[ : 2020.11.1.] 10 8 , 10 9 , 10 10  
10 2( ) 24 4

1  
1. 가

2.  
2  
2  
1 4

[ 2017. 9. 21.]  
10 3( ) 25 4 "  
" (接岸) 3  
, 가 5 (繫船柱)

[ 2018. 7. 4.]  
10 4( 가 ) 25 3 6 가 ( )  
" " ) 1 7 10  
( " " )

1.  
2. 4 4  
3.  
4.

2

2

(開議) ,

1 5

[ 2018. 7. 4.]

11 ( ) . 26

12 ( ) 9 . . 8

10 1 9 .

13 ( ) 29 2

. < 2019. 7. 16.>

- 1. 25 : 5
- 2. 25 : 3
- . (船社), (導船士)

1

1

3 , 2

15

1 . 10 1 4 1

, 2

1

13 2( ) 29 2 1

. 11 1

( " " )

- 1.
- 2.
- 3.
- 4.

1 100 50 1

,

1 2

가

3

1 3 .

[ 2018. 7. 4.]

14 ( ) 32 1

24 10 11

(前)

24

1

10

15 ( )

32 3

< 2019. 7. 16.>

1. 「 」 3 1 가 . .
2. 「 」 3 6
3. 「 」 3 7

15 2( ) 32 4

11

[ 2019. 7. 16.]

16 ( ) 34 1

( "

" ) ,

14 3

12

1. :
2. : 가 1
3. : 14 3

1

15

17 ( )

가 34 3

(口頭)

34 4 " "

1

18 ( ) 가

35 1 1

( " )

3

가 1

13

19 ( )

가 35 1 1

(

" " )

3

35 1 2 " " 1

35 1 6 " " .

1. 가

2.

3. 가

19 2( ) 35 2 4

[ 2018. 7. 4.]

20 ( ) 36 1 ( "

" ) . < 2018. 7. 4.>

1. 60 1 1.2 .

2. 가. 2 5

5

14

1. ( ) 1

2. ( ) 1

3. 2 , , , 「 」 36 1

( ) .

2

15

<2018. 7. 4.>

4

16

.< 2018. 7. 4.>

12 31

1. .

2. ,

21 ( 가 ) 37 1 가 가 .  
3 17 가

1. ( )

2. 1 ( )

1 가

17 가 .

37 1

"

"

- 1.
- 2. (coffer dam)
- 3. (空所)
- 4.
- 5.
- 6. 가
- 7. (閉圍)

37 6

가

.< 2019. 7. 16.>

- 1.
- 2.
- 3.
- 4.

22 ( ) 39 2

(遭難船) 「 」 2 1

( " " )

18

.< 2018. 5. 1.>

1

39 1

23

23 ( ) 39 3

「

」 14 5 .< 2018. 5. 1.>

39 3

1

가

5

24 ( ) 40 7

「 」 41 5

1 2

25 ( 가 ) 41 1

가 19

가

1. ( )

2. 1

1

가

19 가

26 ( 가 ) 18 3 "

" 「

」 1 1

27 ( 가 ) 42 1

가 20

가 ( )



가 1 가 20

28 ( 가 ) 43 1 가  
( " " ) (水上) 21  
가

21 가 1 가

29 ( ) 46 2 (汽笛) (4  
6 ) 5  
1

30 ( ) 47  
22

가

1 1

31 ( ) 48 3  
23

32 ( ) 49 7 " "  
1.  
2.  
3.

33 ( ) 50 2 ( " " )

1. 「 」

2. 50

3. 50 2

( " " )  
가

가.

가 가

가 가

4.

가.

2

10

3

1

3

4

- 1.
- 2.
- 3. 1 3
- 4. 1 4
- 5.
- 6.
- 7.

3 「 」 36 1

(

50 2 25

34 ( ) 51 5  
1 , ,

35 ( ) 2016 1 1 3 ( 3  
12 31 )

- 1. 5 가
- 2. <2019. 2. 11.>
- 3. 10
- 4. <2019. 2. 11.>
- 5. <2019. 2. 11.>
- 6. <2019. 2. 11.>
- 7. <2019. 2. 11.>
- 8. <2019. 2. 11.>
- 9. <2019. 2. 11.>
- 10. <2019. 2. 11.>
- 11. <2019. 2. 11.>
- 12. <2019. 2. 11.>

< 155 ,2015. 8. 4.>

- 1 ( ) 2015 8 4
- 2 ( )
- 3 ( 가 ) 5 3
- 4 ( ) 「 」 19

13

5 ( ) 「 」 8  
2 1 18 1 3

6 ( ) 「 」 8 3  
( 380  
2  
)  
1 「  
」 8 3 4 20 4

7 ( ) 가  
23 1 「 」 10 1

8 ( )  
31 " 「 」 " " 「 」 "

23 2 " 「 」 5 " " 「  
」 4 " .

14 1 " 「 」 5 " " 「 」 4  
"

16 19  
33 1 2 34 1 3  
1 2  
10 14

25 1 " 「 」 5 " " 「 」 4 " .

2 2 " 「 」 " " 「 」 "

9 ( ) 「 」 , 「 」  
가 「  
」 , 「 」

---

< 251 ,2017. 7. 28.>( )

< 255 ,2017. 9. 21.>  
2017 9 22 .

< 261 ,2017. 10. 10.>( 3 )

< 284 ,2018. 5. 1.>( )

1 ( )

2 3

4 ( )

22 1 " 「 」 2 1 1 " " 「 」 2 1 " .

23 1 " 「 」 10 3 " " 「 」 14 5 " .

5

< 294 ,2018. 7. 4.>

1 ( ) . , 3 1 2019 1 1

, 10 8 10 , 19 3 7 2020 11 1 .

2 ( ) 4

4 1 가 .

4 4 1

1 2 4

2 4 1

1. ( ) : 4 1

1)

2. : 4 1 2)

- 1. ( ) : 4 1  
1)
- 2. : 4 1 2)
- 3. : 4 2

< 325 ,2019. 2. 11.>

< 361 ,2019. 7. 16.>

2019 7 16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9. 21.>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무역항	예선보유기준
1. 인천항(경인항을 포함한다) 2. 평택·당진항 3. 대산항(태안항을 포함한다) 4. 군산항(장항항을 포함한다) 5. 여수항(광양항을 포함한다) 6. 마산항(삼천포항, 통영항, 진해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다) 7. 부산항 8. 울산항 9. 포항항 10. 보령항	예항력은 합계 기준 2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구역을 경인항에 한정하는 경우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으로 한다.
1. 목포항(완도항을 포함한다) 2. 동해·묵호항 3. 제주항(서귀포항을 포함한다) 4.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7. 4.>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소화설비 등		예선의 마력		
		2천마력 미만	2천마력 이상 3천마력 미만	3천마력 이상
펌프	능력(m <sup>3</sup> /h)	100	110	120
	Head(m)	60 ~ 80	60 ~ 80	60 ~ 80
소화총	엔진마력	45	50	55
	기(수)	2	2	2
화학소화재탱크(m <sup>3</sup> )		3 ~ 7	3 ~ 7	3 ~ 7

\* 비고

1. 예선업자별로 보유한 예선의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위 표에 따른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화재 소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위험물취급자별 안전관리자 보유기준
산 적 액 체 위험물	1.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 이상 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 이상 6.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	1.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5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5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포장된 위험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li> <li>2.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li> <li>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li> <li>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1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li> <li>2.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li> <li>3.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li> <li>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만, 해당 위험물을 상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선임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li> </ol>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7.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1.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양성교육

1) 교육대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2) 교육과정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	(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양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특성	6
	나) 관련 법규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22

	라) 현장실습	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습	4
	마)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3
2) 평가	교육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		1
3) 총계			40

\* 비교: 평가 결과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 나. 실무교육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 가) 교육시기

-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나) 교육과정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	(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3
	나) 관련 법규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4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6
	라)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3
2) 총계			16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나) 교육과정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	위험물의 특성	1
	나) 관련 법규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2)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 선박 연료공급 작업 시 안전관리	(1)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안전 점검 방법 (2)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 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3)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3
	라)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총계		8

2.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교육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함.

나. 교육과정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	(1) 위험물의 특성 (2)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3
	나) 관련 법규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다)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 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나)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포장 요건, 표시·표 찰 및 증명서류 등) (2)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3)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8

	(5)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라)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2) 총계		16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건당)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5천원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1천원









18. 비고 Remarks

-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 (Yes/No)  
Are there any articles on board deemed hazardous to public safety?  
- 마약류 Illicit drugs [ ] · 총기 및 도검류 Arms [ ]
- 승무원의 면세품 소지 여부 [ ] (Yes/No)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면세 선용품 적재 여부 [ ] (Yes/No)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outside of Korea?
- 승무원 복수항 상륙 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여부 [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
- 감염전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여부 [ ] (Yes/No)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 (Yes/No)  
Is this ship a type of a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보장계약 체결 여부 [ ] (Yes/No)  
Any insurance of other financial security to cover the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여부 [ ] (Yes/No)  
CLO Certificate or Bunker Convention Certificate on board?
- 유조선의 이중선체 여부 [ ] (Yes/No)  
Is tanker a double hull type?
- 북한으로 반입되는 화물 또는 북한으로부터 반출되는 화물 적재 여부 [ ] (Yes/No)  
Loading of cargoes originating from or destined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최근 1년 이내에 북한기항 여부 [ ] (Yes/No), 기항한 경우 기항한 북한 항만명 [ ]  
Is this ship called a 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in 1 year from now? In case what name of the port is?
- 부선 호출부호 [ ]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yyyy)      월(mm)      일(dd)

신고자[선장(기장) 또는 해운대리점]      (서명 또는 인)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사장** 귀하

TO. Administrator of \_\_\_\_\_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The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President of Port Authority)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1. 승무원 명부 Crew List [ ] 2.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 3.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 4.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 ]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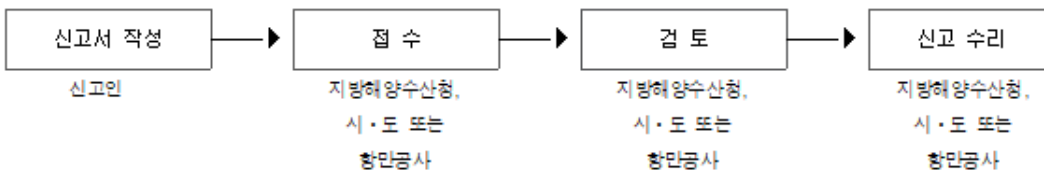
작성방법

- 입항·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출항을 확정할 때에는 '최종'란에, 변경할 때에는 '변경'란에, 취소할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란에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한 역순으로 적습니다.
- '화물명'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에 따른 통일체계물류분류표(HS 코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를 적고, 용 적자화를 중 양하·적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 '\* 국내항 간 편승/상륙'에는 국내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입국허가를 받은 통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수를 적습니다.
- '입항목적'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양하·적하 2. 양하 3. 적하 4. 선박수리 5. 해양사고 6. 승무원 교대 7. 여객 상륙 8. 급유 9. 선용품 적재 99. 기타
- '항해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선박만 코드를 적습니다.
  1. 외국 국적 내항선 2. 일시 외항 3. 내항·외항 자격 변경 4. 나포선박 5. 개인항해 6. 신조선(新造船)
  7. 수출선박 8. 선박명 변경 9. 폐선 예정 10. 남북한 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官公船) 12. 원양조업선
- '검역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승선검역 2. 부선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할인: 1. 10% 2. 16% 3. 50% 4. 80% 5. 100%
  - 사유: 1. 군함 2. 관공선(官公船) 3. 수리 4. 해양사고 5. 투자비 보전 6. 기타
- '수속 장소 및 일시'란에는 입항·출항하기 전에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O.)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 및 일시를 적습니다. 1. 항구명 2. 내항 3. 외항
- '이 항구에서 승선·하선한 승무원/승객'란에는 입항의 경우에는 승선·하선 예정 인원수를, 출항의 경우에는 승선·하선 인원수를 각각 적습니다.
- 첨부서류 중 '선용품 목록' 및 '승무원 휴대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확인하여 받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할 때마다 다음 표에 따른 부수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세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역소 Quarantine Office
외항선 출입 신고서(허가신청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 명부 Crew List	(1)	1	1	1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1)	1	1	1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1		

\* 원양어선인 경우에는 승무원 명부 및 승객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출입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선명	총톤수	G/T			
선주 또는 해운	업체명	업체코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리점	업체 주소		전화번호			
입항 · 출항	입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허가사항	장소 코드	장소명				
	기간	년	월	일	시	분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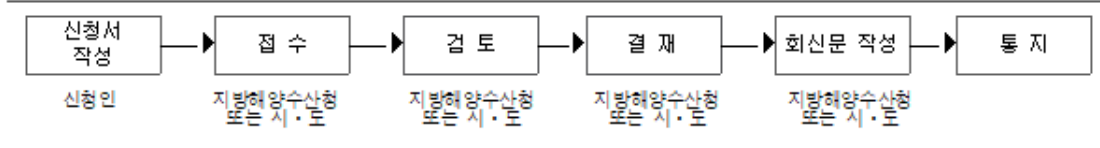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계선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	
	선명	총톤수	G/T			
선주 또는 해운	업체명	업체코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리점	업체 주소	전화번호				
입항 · 출항	입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장소 코드	장소명				
	기간	년	월	일	시	분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선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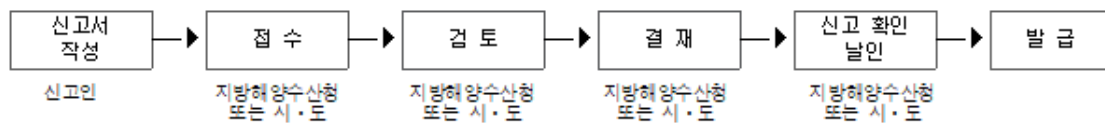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처리절차



제 호

## 선박계선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 예선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소	소재지				
	사업구역(항만명)				
	사업개시 예정일				
예선별 선박제원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기관 마력	비고
				추진기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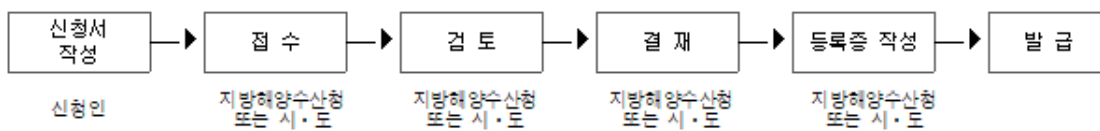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제원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 증명서	수수료 6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결 재
		등록증 작성
		발 급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번호 제 호

## 예선업 등록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소의 위치(소재지)

사업개시예정일

### 등록선박의 표시

사업구역 (항만명)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기관의 마력	추진기형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수납

###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 과징금 납 (납부자)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수납기관

## 독 촉 장

발행번호		발행일
사 업 장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		원
지정수납기관		
납부기한		
공지사항	위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귀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독촉하오니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6.> [항만운영정보시스템\(http://new.portmis.go.kr\)](http://ne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 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호출번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번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반입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업체코드	
	주소		전화번호	
선박	선명		호출번호	
	선박 종류		총톤수(G/T)	
	해당연도-입항횟수		전 출항지 코드	
반입사항	품명	외	총중량(M/T)	컨테이너수량(TEU)
	구분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작업횟수[ ]
	운송형태	[ ]컨테이너위험물	[ ]산적액체위험물	[ ]벌크 포장위험물 [ ]기타
	목적	[ ]양하	[ ]적하	[ ]환적 [ ]기타
하역사항	업체명		업체코드	
	하역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하역장소 코드	
	하역방법 및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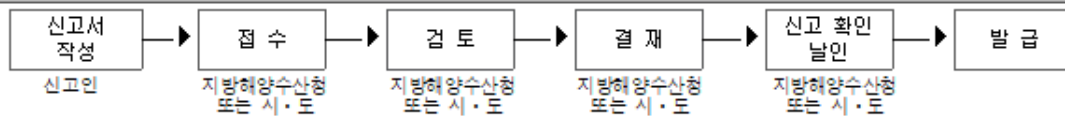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위험물 반입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물 일람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업체코드	선명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해당연도-입항횟수	구분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일련 번호	증명서 번호	작업 구분	UN No.	CLASS No.	품명	중량 (MT)	컨테이너 No.	B/L No.	하역 장소	반입일	송화인	수화인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입항횟수'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적은 입항횟수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증명서번호'란에는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Manifest Reference No.)를, 수출화물 또는 연안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번호 또는 위험물 운송적합인증서 번호를 적습니다.
3. '작업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1. 양하 2. 양하T/S 3. 적하 4. 적하T/S 5. 통과화물 6. 급유 9. 기타
4. '품명'란에는 적재 화물의 품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유류의 경우에는 가솔린, 중유, 동유, 원유 등으로 세분하여 적습니다.)
5. 통과화물(선박에 적재된 위험물 중 해당 항구에 내리지 않는 위험물을 말합니다)의 종류가 많아서 모두 적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이 경우 '품명'란에는 ○○의 ○종(예: 동유 외 20종)으로, '중량'란에는 통과화물의 총중량을 각각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위험물 적하목록 등)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6.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적습니다.
7. 작업횟수는 해당 항단에서 작업한 횟수를 적습니다.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UN No.'란, 'CLASS No.'란, '품명'란 및 '중량(M/T)'란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

### [ ]승인 [ ]변경승인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소	소재지		
	사업구역(항만명)		
	변경사항 적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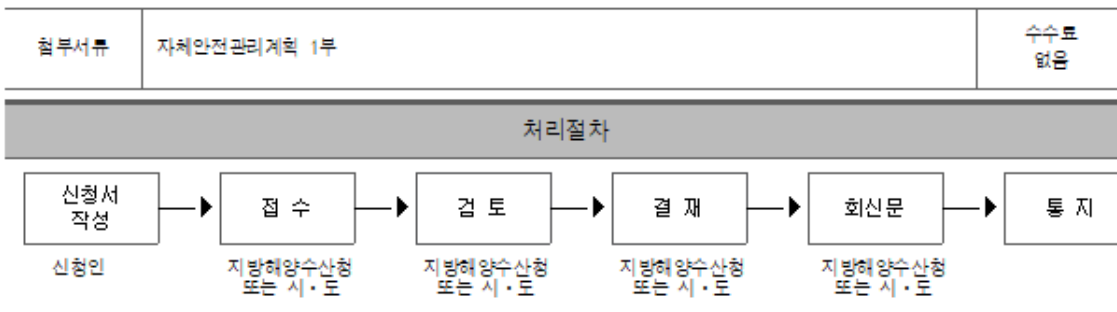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위 사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전화번호	
	교육기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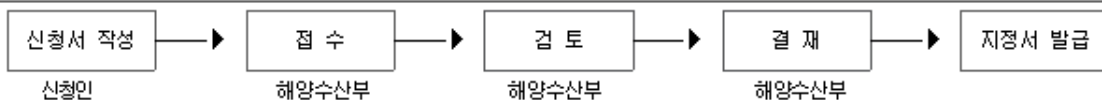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기관의 시설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등)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연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

명 칭:

소재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제 호

## 수 료 증

1. 과 정:
2. 관 련 규 정:
3. 기 간:
4. 소 속:
5. 성 명:
6.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 선박수리 [ ] 허가신청서 · [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처리기간	허가는 1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신청내용	선박의 소유자(용선주)			
	선박 종류 · 선명 · 톤수 및 호출부호			
	수리 범위			
	수리 방법			
	수리 기간			
	수리 장소			
	화물 적재 여부			
	허가(신고) 조건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선박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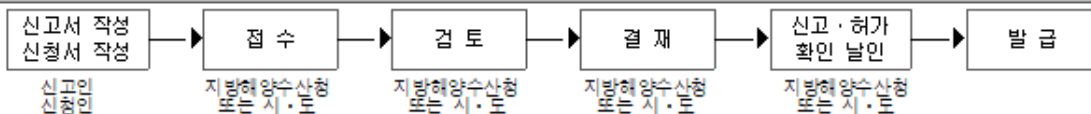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선박수리 [ ] 허가 [ ]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신고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 식상이 어려운 난은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일
요청인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요청내용	선명		
	해양사고 종류		
	위치		
	설치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치내용	실제 설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치금액(사용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등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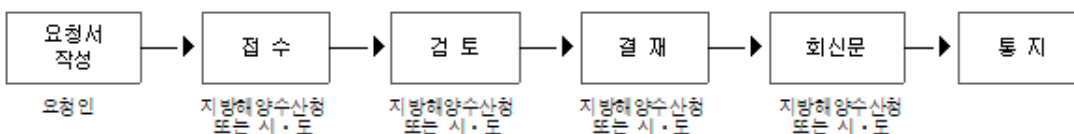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업체코드	
	주소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선명		총톤수(G/T)	
공사 · 작업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장소				

허가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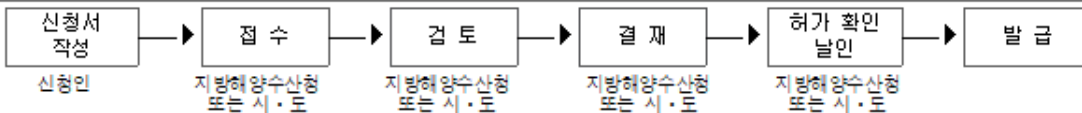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1천원
------	--	------------

#### 처리절차



제 호

### 공사·작업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행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행사의 종류		
	목적		
	방법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구역		
	장소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행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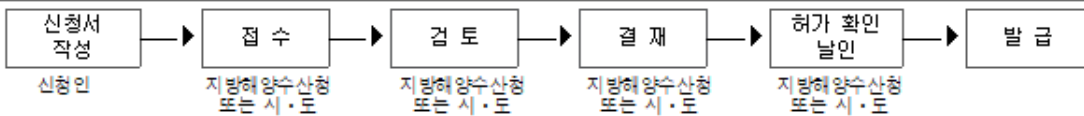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제 호

### 행사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 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

발행번호	발행일
선박명 Name of Vessel	선장명 Name of Master
선박번호 Number of Register	선박 종류 Kind of Vessel
총톤수 Gross Tonnage	국적 Flag
입항일 Date of Entrance	년 월 일
출항예정일 Expected Date & Time of Departure	년 월 일
출항중지 사유 Reasons of Departure Suspension	
출항중지 기간 및 해제조건 Duration of Departure Suspension & Terms of its Releas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중지를 통지합니다.

It is notified that the departure out of port of above mentioned vessel be suspended.

년(yyyy) 월(mm) 일(dd)

지방해양수산청장  
Administrator of \_\_\_\_\_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 시·도지사  
The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 쪽)

제 호
<b>무역항 단속공무원증</b>
사 진 3cm × 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8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 [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

(뒤 쪽)

<b>무역항 단속공무원증</b>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1. 이 사람은 무역항 단속 검사·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자본금·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li> <li>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임원의 신원증명서</li> <li>6. 사업계획서</li> <li>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li> <li>2.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 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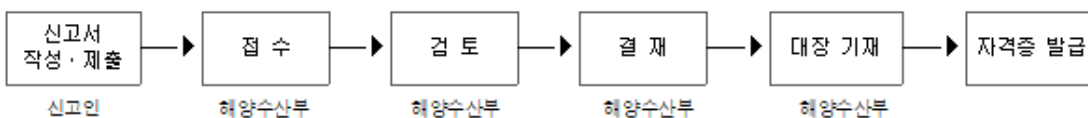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정번호 제 호

## 중계망사업자 지정서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생년월일):
3. 법인등록번호: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정된 사업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따른 사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